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 실행에 관한 공고**재정부,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2호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(個體工商戶)의 발전을 진일보 지지하기 위하여 소형저이윤기업과 개인사업자 소득세 우대정책 실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1.소형저이윤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<재정부, 세무총국의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한 일반 특혜성 세수 감면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>(재세[2019]13호) 제2조에서 규정된 우대정책의 원칙하에 기업소득세를 다시 50% 감면하여 징수한다.2. 개인사업자의 연간 과세소득액 중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 우대정책의 원칙하에 기업소득세를 50% 감면하여 징수한다.3. 본 공고의 집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.이를 특별히 공고한다.재정부 세무총국2021년 4월 2일 |  | **关于实施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所得税****优惠政策的公告**财政部、税务总局公告2021年第12号　　为进一步支持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发展，现就实施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所得税优惠政策有关事项公告如下：　　一、对小型微利企业年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的部分，在《财政部 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》（财税〔2019〕13号）第二条规定的优惠政策基础上，再减半征收企业所得税。二、对个体工商户年应纳税所得额不超过100万元的部分，在现行优惠政策基础上，减半征收个人所得税。　　三、本公告执行期限为2021年1月1日至2022年12月31日。　　特此公告。财政部 税务总局　　2021年4月2日 |